

하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 계약서(피관리기업용) 신규조문대비표

변경전	변경후	비고													
<p>용어 변경(계약서 모든 조항) 갑 을</p>	<p>용어 변경(계약서 모든 조항) 을 갑</p>	<p>갑→을 을→갑</p>													
<p>_____ (이하 “갑” 이라 함) 와 (주)하나은행(이하 “을” 이라 함)은 하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,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기타 관련된 업무의 약관을 적용한다.</p>	<p>(주)하나은행(_____ 지정, 이하 “갑” 이라 함)과 _____ (이하 “을” 이라 함)은 하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,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기타 관련된 업무의 약관을 적용한다.</p>														
<p>제 3 조(서비스 종류)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. ① 글로벌 계좌정보전송 1. “을”의 본점이 “수신기관” 일 경우 “을”은 실시간으로 “계좌정보”를 전송한다. 2. 제 ①항 제 1호를 제외한 “수신기관”으로 전송은 아래 표를 따른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56 1010 651 1704"> <thead> <tr> <th>서비스 종류</th> <th>설명</th> <th>전송 시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MT940 전송</td> <td>마감잔액전송 A</td> <td>D일의 마감잔액을 D+1일에 전송함(거래가 발생하지 않아도 일별 전송이 발생함)</td> <td>06시 01분</td> </tr> <tr> <td>마감잔액전송 B</td> <td>D일에 거래가 발생하여 계좌잔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마감잔액을 D+1일에 전송함</td> <td>06시 01분</td> </tr> <tr> <td>거래내역전송</td> <td>D일에 거래가 발생하여 계좌잔액이 변경된 경우 해당 거래내역을 D+1일에 전송함</td> <td>06시 01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서비스 종류	설명	전송 시간	MT940 전송	마감잔액전송 A	D일의 마감잔액을 D+1일에 전송함(거래가 발생하지 않아도 일별 전송이 발생함)	06시 01분	마감잔액전송 B	D일에 거래가 발생하여 계좌잔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마감잔액을 D+1일에 전송함	06시 01분	거래내역전송	D일에 거래가 발생하여 계좌잔액이 변경된 경우 해당 거래내역을 D+1일에 전송함	06시 01분	<p>제 3 조(서비스 종류) ① “글로벌 계좌정보전송” 서비스는 부속서류 3(글로벌 계좌정보전송 서비스 종류)의 내용을 따른다.</p>	<p>“부속서류 3” 신설</p>
서비스 종류	설명	전송 시간													
MT940 전송	마감잔액전송 A	D일의 마감잔액을 D+1일에 전송함(거래가 발생하지 않아도 일별 전송이 발생함)	06시 01분												
	마감잔액전송 B	D일에 거래가 발생하여 계좌잔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마감잔액을 D+1일에 전송함	06시 01분												
	거래내역전송	D일에 거래가 발생하여 계좌잔액이 변경된 경우 해당 거래내역을 D+1일에 전송함	06시 01분												
<p>제 4 조(서비스 신청 및 변경) ① “갑”은 서비스의 신규 신청 및 변경시 “하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 이용신청서(피관리기업용)”과 “하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 계좌등록 신청서(피관리기업용)”을 작성하여 ”을”에 제출한다.</p>	<p>제 4 조(서비스 신청 및 변경) ① “을”은 서비스의 신규 신청 및 변경시 부속서류 1[하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 이용신청서(피관리기업용)]과 부속서류 2[하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 계좌등록 신청서(피관리기업용)]을 작성하여 ”갑”에 제출한다</p>	<p>갑→을 을→갑 부속서류 명시</p>													
<p>제 9 조(면책) “을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②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“을”의 전산장애 등에</p>	<p>제 9 조(면책) “갑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② “갑”의 귀책사유가 없는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</p>	<p>을→갑 “일체의” 삭제 “귀책사유가 없는” 추가</p>													

<p>의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의 경우</p>	<p>으로 인한 전산장애 등에 의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의 경우</p>	
<p>제 11 조(관할법원) 본 계약상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,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()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</p>	<p>제 11 조(관할법원) 본 계약상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<u>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</u></p>	<p>관할법원을 법이 정하는 법원으로 함</p>